

서울특별시 강서구 중·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9년 10월 22일
미래·복지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: 2019년 10월 15일

나. 제안자: 정정희 의원

다. 회부일자: 2019년 10월 22일

라. 상정일자: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미래·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19. 10. 22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: 이종숙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중·장년층의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설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, 취업훈련·일자리, 사회공헌활동 등 인생이모작 및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등의 지원·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1)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(안 제2조~제3조)

- 2)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의 종류(안 제4조)
- 3)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등(안 제5조)
- 4)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사용료,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9조)
- 5)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~1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노후준비 지원법」,
「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」
- 다. 합 의: 어르신복지과
- 라. 기 타: 입법예고(2019. 10. 15. ~ 10. 21.) 결과: 의견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정우숙)

- 본 제정안은 은퇴 전·후 새로운 인생설계를 고민하고 있는 중년층 및 장년층에게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 등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노후 생활안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“인생이모작 지원시설” 설치하여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- 중·장년층의 경우 조기퇴직 및 재취업의 한계로 기본적인 생계문제는 물론 노후불안 등으로 이어져 이는 개인이나 가정문제로 한정되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임
- 중·장년층에게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, 교육지원, 문화·여가사업 등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중·장년층

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생애 재설계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,

- 노후안정의 기초를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성 회복으로 인한 정신적 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이 타당함

6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7. 토론요지 : 생략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붙임 관계법령 1부.

□ 지방자치법

- 제66조(의안의 발의)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
-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,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. 다만,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.
-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.

□ 노후준비 지원법

-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□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

- 제5조(재정지원 등)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자치구 및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